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52호 2017. 3. 1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안) 열람 · 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입안(안) 열람 · 공고 ----- 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87호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열람 · 공고 ----- 3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2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미개설구간)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도로시설 : B=15m, L=14m, A=207m²(금회 사업구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2	166	15	285	271	14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욱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33(십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15. 06. 29. ~ 2017. 02. 28.
- 변 경 : 2015. 06. 29. ~ 2017.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하동	942-6	전	67	1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2	당하동	943-19	구	112	102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3	당하동	943-6	잡	52	52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4	당하동	943-10	답	436	24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5	당하동	산214-1	임	15,195	28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2	166	15	집산 도로	285 (14)	광로 3-27	인천세무고등학교, 당하동 943-6	일반 도로		'99.6.23	

※()는 금회 사업구간(세무고등학교 진입도로) 연장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2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호선, 사업명 : 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4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2호선)
 - 명칭 : 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구분	등급	류별	노선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비고
당초	소로	3	2	6	107	659	
변경	소로	3	2	6	107	6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6. 8. 29.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3	2	6	국지 도로	107	중로 2-135 시천동 172-10	소로3-1 시천동 산54	일반 도로	-	2005.04.04	시천2

■ 용 지 조 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기정 계			6필지		6,435	659						
변경 계			7필지		6,710	672						
1	기정	시천동	148-1	전	1,421	3	유충규	인천 서구 시천동 147				
2	기정	시천동	147-2	전	1,395	382	유충규	인천 서구 시천동 147				
	변경	시천동	147-2	전	1,395	395	유충규	인천 서구 시천동 147				
3	기정	시천동	147-3	대	465	34	유충규	인천 서구 시천동 147				
	변경	시천동	147-3	대	465	33	유충규	인천 서구 시천동 147				
4	기정	시천동	147-1	대	440	3	유풍택	인천 서구 시천동 147-3				
5	기정	시천동	145-2	전	1,947	202	진주류씨가 관공후장진 (영월공)과 시천문중	인천 서구 아라로 105번길34(시천동)				
6	기정	시천동	143-7	도	767	35	인천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				
7	기정	시천동	147-7	대	275	-	유충규	인천 서구 시천동 147				
	변경	시천동	147-7	대	275	1	유충규	인천 서구 시천동 147				

■ 지 장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시천동 147-2	계량기	청동	2EA	유충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47	
			수도계량기				
		채신주	콘크리트	1주	KT	-	
2	시천동 147-3	담장	블럭담	4m	유충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47	
			H=1.8m				
3	시천동 145-2	채신주	콘크리트	1주	KT	-	
		전력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	-	
		가건물	철골/천막	1동	진주류씨가 관공후 장진(영월 공)과 시천 문중	인천 서구 아라로 105번길34(시천동)	
		비닐하우스	철골/비닐하우스	4동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A-2)

기정				변경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63	2	1,186.5	5획지로 분할		2-1	431.6	
					2-2	416.6	
					2-3	338.3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63	2	획지분할 및 분할가능 획지수 삭제	적정규모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정서진로 651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3. 1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33,-36번지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	소공원	가좌동 556-33번지	-	856	856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①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신설 A = 85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신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주차장	가좌동 556-36번지	-	696.8	696.8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②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신설 A = 696.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열람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3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안)
 열람 ·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117번길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 신설 (연장:831m, 폭원:10m)

나. 입안사유

- 장고개로 117번길 일원의 도로를 결정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310	10	국지 도로	831	대로1-1 (장고개로)	중로1-69 (염곡로)	일반 도로	-	-	송유관설비(1-3), 하천(1-1) 중복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소로 1-310	○도로 신설 - 연장(L) : 831m, 폭(B) : 10m	○염곡로와 장고개를 연결하여 인근 입주기업 및 지역민의 편의 증대 도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와 상충이 있는 일부조문 정비
(안 제8조, 제10조, 별지 제 1호~제7호)
-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 및 서식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촉으로 조문변경(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23) 또는 Fax(560-271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3.2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생년월일 수집으로 변경코자 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변경 추진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촉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와 상충되게 ‘주민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 및 서식을 ‘생년월일’수집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8조 ~ 제10조, 별지 제1호 ~ 제7호)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촉으로 조문 변경(안 제12조제1항, 제12조 제5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4조 ~ 제14조)
개정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주요결정사항”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위임 할”을 “위임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부분만”을 “해당 부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열람시”를 “열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열람기간”을 “열람 기간”으로, “열람장소”를 “열람 장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 의장이 부의하는”을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서구의회의 의장이”를 “서구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위촉 해제한다.

제12조제6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촉위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것외”를 “것 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u>주요결정사항</u></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생략)</p> <p>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u>위임</u>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p> <p style="text-align: center;"><u>주요 결정사항</u></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위임할</u>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p>

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생년월일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

 -----.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생년월일 -----

 -----.

③ ----- 열람 시 -----
 -----.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 3. (생략)
- 4. 그 밖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생략)
-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3. (생략)
-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

④ -----

----- 열람 기간
----- 열람 장소-----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 ----- 인
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
의회-----.

- 1. ~ 3. (현행과 같음)
- 4. --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 2. ----- 서구의회에서 ---

- 3. (현행과 같음)
- 4. -- 밖에 ----- 관련 분
야-----

⑤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

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⑧ (생략)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치 없이 자동 위촉 해제한다.

⑥ -----
----- 1 이상-----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위원
위원에게 -----
-----.

⑩ ----- 것 외-----

-----.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계 법 령 발 취

□ 「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5.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3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입안(안)

열람 ·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 (면적:1,736.7㎡)

나. 입안사유

○ 가좌역 일원 역세권 및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차장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서구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	증) 1,736.7	1,736.7	-	

2) 주차장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신설 - 면적 : 1,73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좌역 일원 역세권 및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조성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387호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 관리계획(안) 입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m ²)			비고
				당초	증감	변경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1개 시설 							
변경	공촌정수장	서구 공촌동 259번지 일원	형질변경	158,184	-	158,184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건축 연면적	19,215.78	1,926.91	21,142.69	

※ 위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및 중도위 심의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682)

3.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4. 관련서류: 따로 붙임(게재 생략)